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5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송갑석 · 서삼석 · 전용기

이동주 · 인재근 · 문진석

양향자 · 김홍걸 · 민형배

신정훈 · 황운하 · 이장섭

임종성 • 이성만 • 윤후덕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VR·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취약한 상황으로서 역량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

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요청됨.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19. 4. 17.)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 업의 육성・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 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 정임.

이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 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남에 따라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 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관계부처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77조제2항).

- 다. 특구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처리하 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토 록 경우에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안 제74조의 2 신설, 제79조 및 제81조).
- 라. 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 연장사유 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의 연 속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제5항 신설, 제86조).
- 마.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8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바.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88조, 제90조, 제143조).
-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

에는 취소를 명문화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취소 사항에 '시 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89조 및 제91조).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함으로 써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1조의3 신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 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청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도지사가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할 때(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령에서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 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및 규제특례 등의 변경 등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대한"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단서 중 "변경하려는 경우"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 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8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규제 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6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한 차례만"을 "한 차례"로 한 다.

제8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 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실증사업자는"을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 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

- 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의 착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①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8조제2항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실증특례의 취소)"를 "(실증특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90조제12항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를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99조제3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5조 중 "데이터 마스킹"을 "가상 데이터 대체"로 한다.

제4장에 제1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3(권한의 위임) 제72조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신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제1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	16
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	
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	
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	
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	
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	
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u>규제의 전부 또</u>	규제의 전부 또는 일
<u>는 일부</u> 를 적용하지 않는 것	부(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을 말한다.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한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청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도지
	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
	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
	<u>청할 때(규제자유특구의 변경</u>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다른 법령에서 공
	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
	우 제74조제2항의 절차를 생략
	<u>할 수 있다.</u>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	②
장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	<u>40명</u>
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	3
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된다.	
1	1

-----중소 <u>벤처기업부장관</u>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 ⑨ (생 략)

-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저심의위원회) ① (생략)
 - 1. (생략)
 -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 자유특구 지정 목적·취지의 범위 내에서 <u>규제자유특구사</u> 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 심의·의결

② ~ ⑤ (생 략)

-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저 변경)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 7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u>국무조정실장</u>
④ ~ ⑨ (현행과 같음)
세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업자 및 규제특례 등의 변경
등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
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대한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 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한 평가) ① ~ ④ (생 략)

<신 설>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 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 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

<u>경</u>	하려	는	경우	-나	주	민.	의	권리	를
<u>제</u>	한하	거니	} o	무	를	부	과	하지	않
느	규지	네자	유특	구	계호	틱	및	규저]자
<u>유</u>	특구	의	지정	을	변	경	하급	려는	경
<u>우</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 한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 유)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 한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 수도권 시 · 도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 경·	우나 부	나득이

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 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 · 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⑧ (생 략)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⑤ (생 략)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7 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 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 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u>한</u> 차례

(7) · (8) (현행과 같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 관할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 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 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 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 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 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야 하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 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 령 정비의 착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신 설>

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 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 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 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 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 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신 설>

- ①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 하여 <u>제7항</u>에 따른 실증특례 적 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u>제8항</u>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
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힝
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⑪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
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디
만, 이 경우에도 규제자유특구
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
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
한다)는
,
<u>(1)</u>
<u>제11항</u>
,
<u> </u>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조 (생 략)
 -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규 저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
 책임보험이나 공제
<u> </u>
<u></u>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 1. ~ 5.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이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 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 ·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① (생 략)
 - ②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u>책임보험</u>에 가입하여야 한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
<u> 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① (현행과 같음)
①
<u>책임보험이나 공제 등</u>

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생략)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 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 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 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 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 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이 경우 중소벤처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임시허가를 취소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u> </u>
1 4 /코레키 키 ()
1. ~ 4. (현행과 같음)
②
<u>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u>

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와 시·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 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 각 둔다.

- 1. · 2. (생략)
-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 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위원</u> 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1 0 (원웨과 기수)
1. · 2. (현행과 같음)
3
ما ما
위원
회의 회의에 부치는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 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 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 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 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 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 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 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 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가상 데이터 대</u>
체
제141조의3(권한의 위임) 제72조
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
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3조(과태료) 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 2. -----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u>임보험이나 공제 등</u>-----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 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u>책</u> $\Big|$ 4. -----<u>책</u> <u>임보험</u>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u>임보험이나 공제 등</u>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 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